

2-2-9 실습교육 운영 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본교 교과과정에 따라 실습을 학점으로 부여하는 교과목의 운영 및 학점인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실습교과목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3조(실습교과목의 구분) 실습교과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 <개정 2020.6.8.>

1. 실험·실기·실습 : 교내의 실험·실기·실습실에서 진행되는 전공 실습
2. 현장실습 : 교외 기관의 현장에서 진행되는 전공 실습
3. 교육실습 : 교직과정 이수에 필요하여 교육기관에서 진행되는 실습
4. 실습시간이 포함된 과목(이론·실습병행강의) : 이론과 실습이 병행되는 전공 교과목의 실습

제4조(실습교과목 개설) ① 학부는 해당 교과과정 전공교과목으로 실습교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.

② 실습교과목을 개설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갖추어 교육과정 위원회에 신청한다.

1. 개설과정 및 학점 수
2. 실습의 목적과 내용
3. 실습기간 및 실습시간
4. 실습기관 및 지도교수
5. 그 밖의 개설에 필요한 사항

③ 실습교과목은 학부 교육과정에 따라 해당 학기내에 개설하여 실습을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단 현장실습 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교과목 개설 직전 방학 중 기관실습을 실시하는 학기 외 실습의 경우 다음 학기에 학점을 부여한다.<신설 2021. 2. 8 >

제4조의 2(교류학생의 실습교과목 개설 및 학점인정)

① 학부는 본교와 협약을 맺은 국내·외 다른 대학의 교류학생을 위한 실습교과목을 개설할 수 있다.

② 이수시간 및 학점 인정은 본 규정에 따른다.

[본조 신설 2017.6.21.]

제5조(이수시간 및 학점) 실습교과에 따른 학점 및 이수시간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실험·실기·실습의 경우 1학점 당 이수시간을 30시간 이상으로 한다.<개정 2020.6.8>
2. 현장실습의 경우 1학점 당 이수시간을 45 시간 이상으로 한다.<개정 2020.6.8>
3. 교육실습의 경우 전일제 실시로 1학점당 2주로 한다(학점당 기준시간 적용 제외)
4. 실습시간이 포함된 과목(이론·실습병행강의)의 실습은 교과목 학점내에서 이수시간의 30% 이상을 실시하며, 수업계획서에 실습시간을 명시한다.<개정 2020.6.8>

제6조(실습운영계획 수립) 학부장은 해당 교과과정에 따른 실습운영계획을 수립한다.

제7조(실험·실기실습실 관리) 학부장은 실험·실기실습실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실습실 사용과 관련한 안전관리를 한다.<개정 2020.3.10>

제8조(실습기관 선정) 학부장은 실습교육을 위해 해당 교과목과 관련이 있는 기관의 기준을 정하고, 기준에 부합한 경우 총장의 승인을 거쳐 실습기관을 선정한다.<개정 2020.3.10>

제9조(실습생 사전교육) 학부장은 실습생이 결정되면 실습목적, 실습일정 및 준비사항 등 실습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사전에 교육하여야 한다. 단, 필요시 실습지도교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.

제10조(실습생의 의무) 실습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1. 실습기관 내규 및 안전관리 준수
2. 실습기간 중 인지한 실습기관의 기밀누설 금지
3. 실습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반사항 준수

제11조(실습의무 위반자 조치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학점을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
1. 실습교육에 무단결석한 자
2. 실습기관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
3. 고의적으로 실습분위기를 저해한 자
4. 학생의 신분을 벗어난 행위로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자

제12조(실습지도) ① 지도교수는 실습기관을 방문하여 실습환경, 실습상황 등을 점검하고 실습생과 실습기관의 고충이나 요구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② 지도교수나 실습기관의 실습지도담당자에게는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습지도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3조(성적평가) 실습성적은 실습기관의 실습지도 담당자가 평가한 성적과 지도교수가 부과한 과제 및 실습기관의 평가를 근거로 평가한다.

제14조(실습비 부과) 실습에 필요한 실습비를 실습생에게 부과할 수 있다.

제15조(세부사항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전공영역과 관련한 실습운영세칙에 따른다.

제16조(기타)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, 감염병 확산등으로 부득이하게 실습운영이 어려운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으로 실습장소, 이수시간 등의 기준을 달리 할 수 있다.

[본조신설 2020.6.8.]

부 칙

이 규정은 2012년 11월 14일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7년 6월 21일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0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1년 2월 8일부터 시행한다.